

의안번호	2215508
의 퇴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6. 4. 22.
추 계 번호	25A7186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②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7조), ③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안 제8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9,000만원(연평균 3,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50	-	-	-	-	50	10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안 제7조)	55	-	-	-	-	55	11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안 제8조)	17	17	17	17	17	85	17
합계	122	17	17	17	17	190	3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디스플레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교역 및 국내 수급 동향, 공급망 분석 4.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디스플레이기술의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7조(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위원회)	①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스플레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품목의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9.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디스플레이산업 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12.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안 제9조(디스플레이산업 전문연구기관)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개발, 디스플레이사업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0조(디스플레이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디스플레이산업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기획 2.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5.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기술표준 대응 6.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7.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 지원 8.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9.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6	안 제11조(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6.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8.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첨단 디스플레이기술 확보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1. 첨단 디스플레이 관련 시제품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2.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을 위하여 클린룸(clean room) 등의 제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디스플레이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첨단 디스플레이기술 확보 및 산업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부의 공공조달 또는 방위산업 분야에 필요한 국산 디스플레이기술 및 관련 제품의 고도화 및 교체에 대한 보조 2. 공공시설 내 디스플레이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 국산 디스플레이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시범사업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다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안 제12조(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따른 연구개발특구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5.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6.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스플레이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디스플레이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디스플레이특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디스플레이특구 개발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디스플레이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디스플레이특구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특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디스플레이특구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안 제14조(디스플레이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디스플레이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디스플레이특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디스플레이사업자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디스플레이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4.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특구에 산업집적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또는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디스플레이특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6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 디스플레이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9조(디스플레이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특구 내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및 디스플레이특구로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재량규정
11	안 제2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21조(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3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대학등의 입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④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시설·교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특성화대학등의 입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제3항에 따른 입학 증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
3	안 제8조(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	○ (일부추계)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에 대하여 추계함.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구성 기준과 개수, 소속위원의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회의수당 등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9조(디스플레이산업 전문연구기관)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디스플레이)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디스플레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자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관련 재정사업 현황(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	안 제10조(디스플레이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	
6	안 제11조(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	안 제12조(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 등)	×	
8	안 제14조(디스플레이특구에 대한 지원)	×	
9	안 제16조(조세에 관한 특례)	×	
10	안 제19조(디스플레이산업 전문인력 양성)	×	
11	안 제20조(계약에 의한 직업 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12	안 제21조(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부는 다수의 디스플레이산업 지원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참고자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관련 재정사업 현황(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심사와 사업준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에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유사 연구사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보호 전략 수립」(산업통상부, 2022년, 4,000만원), 「디스플레이-XR 기반 첨단 전자산업 육성 전략 연구」(산업통상부, 2023년, 5,000만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기후테크 기업 육성방안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5,000만원) 등이 있음
 -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50	—	—	—	—	50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7조)

-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고, 추계 첫 해에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5,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유사 연구사례로는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체계 수립 및 연계산업 조사·분석」(한국화학연구원, 2024년, 5,400만원), 「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용역」((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년, 4,950만원) 등이 있음
 - 제정안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항에서 실태조사의 실시와 통계 작성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주기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가정함

[표 4]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안 제7조)	55	—	—	—	—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안 제8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500만원(연평균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17명, 회의 횟수는 분기당 1회씩 연 4회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20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정원 20명에서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17인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을 고려하여 1회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함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500만원(연평균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7~2031년: 민간위원 수(17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1,700만원

[표 3]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안 제8조)	17	17	17	17	17	85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

[참고자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관련 재정사업 현황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단위: 백만원)

관련 제정안 조항	세부사업		2025 예산	2026 예산
안 제11조(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배터리·디스플레이첨단제조공정용레이저장비산업핵심기술 개발(R&D)(산업통상부)		—	5,64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산업통상부)		50,000	18,000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산업통상부)		6,730	5,400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R&D)(산업통상부)		6,210	5,175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700
	디스플레이원천기술개발(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200
안 제12조(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 등). 안 제14조(디스플레이특구에 대한 지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산업통상부)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2산단 용수공급	—	2,145
		아산탕정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확충	—	3,130
안 제18조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 활화 지원)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구축(산업통상부)		3,700	3,650

자료: 산업통상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